

# 2021학년도 2학기 재입학 허가계획

- 근거: 학칙 제49조(재입학) 및 학사관리규정 제35조(재입학) 내지 37조의2(재입학의 제한)
- 재입학 허가대상: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으로서 재입학 하고자 하는 사람
- 제한
  - 학칙 제114조 및 제115조 제3항에 따라 제적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  -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  - 학사징계 및 예과에서 유급으로 제적된 사람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
  - 수의학과 및 의학과에서 징계, 유급,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
- 재입학 허가 가능인원: **151명**(대학별 여석현황 붙임 참조)
  - 재입학 지원자는 퇴학 또는 제적 당시 소속되었던 학부(과)만 지원할 수 있음
  - 사범대학, 수의예과, 수의학과, 의예과, 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 지원자는 학부(과)의 정해진 인원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음.
- 재입학 허가계획 공고
  - 공고문: 붙임 참조
  - 공고방법: 학교 홈페이지 및 신문 [2021. 5. 12.(수)] 공고
- 추진 일정
  - 단과대학
    - 접수기간: **2021. 6. 1.(화) ~ 6. 14.(월) 18:00까지**
    - 심의기간: 2021. 6. 15.(화) ~ 6. 25.(금)
    - 허가신청: **2021. 6. 30.(수)까지 학사지원과 제출**
  - 학사지원과 : 2021년 7월 중순 총장 결재 후 최종 승인 허가 예정
- 단과대학 제출서류
  - 재입학원서 1부
  - 재입학 사유서 1부
  - 이수학기 무효신청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  - 서약서 1부
  - 성적확인표 1부
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
  - 단과대학 교학위원회 심의자료
- 기타
  - 각 대학은 **교학위원회의 심사**를 거쳐 총장에게 재입학 허가 요청(심의내용 첨부)
  - 이수학기 무효신청은 희망자에 한하여 2개 학기까지 할 수 있음  
(학사경고로 제적된 사람은 최종 학기 무효)
  - 재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소정의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.